

日변호사 日정부 보상 마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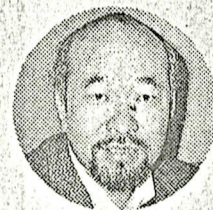
간통죄 폐지론에 대한 토론회

때: 1992. 4. 27 (월) 오후 2시 곳: 여성백인회관 6층강당

주최: 여성단체협의회, 여성단체연합, 가정법률상담소 후원: 한국여성개발원



◇간통죄 토론 여성단체 협의회등이 27일하오 汝矣島여성백인회관에 서 연 간통죄 폐지론에대한 토론회에서 여성단체대표와 현직검사, 변호사등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. 【郭峯成기자】



◇다카키씨

다카키씨 주장

日帝시대 정신대피해자들 에 대해 정부차원의 배상청 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는

법률부의 의견서(4월26일 자朝刊)에본문과 같은취 지로 일본정부의배상책임을 강조한 법률적 견해가 일 부변호사의 의해 표명됐 다.

일본은 변호사회의 다카 키 켄이치(48·高木建一) 변호사는 지난24일 서울못 데호텔에서 '의무변호사규 제와 개발대책'이란 주제 로 대한변협이 주최한韓 中日변호사협회 심포지엄

에서 '아시아의 미래와 일본 의 정후보안'이란 특별 강연을 통해 '종군위안부문 제는 식민지박해와 인권의 양적 정정성을보여주는 명백 한 국제법상의 인도(人道) 에 관한 죄로 하루빨리 정 부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 야한다'고 밝혔다.

다카키변호사는 강연에서 2차대전후 독일나치의 전 후보상처럼 적절한한국 제반의인도에 관한 전

“독일은 戰後국제법따라
日은 거론조차없이

조항을들어 일본정부는 원 폭 피해자등이나 사회헌정 포·재정헌정인물등을 더 이상 회피할수없는 상황에 이르렀다. 또 특히 최근의 새로부각된 종군위안부문 제는 아시아뿐만아니라 온세 제를 걸악케한 반인성범죄로 새로운 차원에서 별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'고 주장했다.